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수 RE100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교부〉

■ 김교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92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우수 RE100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교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17.
3. 회부연월일 : 2025. 4.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정부의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여 RE100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홍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우수 RE100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교부

‘RE(Renewable Electricity) 100’이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함)이 마련되어 있음.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계획의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2. (생략) 3.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u>지역 역점시책</u>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지역 역점시책</u> , <u>「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¹⁾, 제12조²⁾ 및 제66조의2제1항³⁾에 따른 계획의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u>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시·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제출·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위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914호)

제66조의2(탄소중립사회 이행과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제66조의2제1항에서는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조성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 언급된 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게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게 되면, 해당 계획들의 이행을 독려함으로써 RE100 달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⁴⁾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고, 동 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를 감안할 때⁵⁾, RE100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후대응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우수 RE100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후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지방교부세

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등을 재원으로 조성, 2025년도 1.3조 규모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법」이 교부대상의 대강(①지역 현안, ②재난 및 안전관리, ③국가지
방협력 등)을 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